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입법정당성의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국내기업들의 글로벌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매우 높음**
- **2018년 12월 김용균 사고 후 산안법개정 후 2020년 1월 개정법 시행**
- **산안법 재개정하여 2021.1.16일 시행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시 원청사업자 책임 신설) 앞두고 시행과 동시에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산업안정보건법과의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 위반시에만 형사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해야 처벌받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이 중대재해 발생하면 형사처벌

입법내용상 문제

* 중대 산업/시민 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 :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하청업체의 사고발생시 원청업체의 사업주, 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의 대체벌), 법인도 형사처벌
-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삭제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여타 사업장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1.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2.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1. 전치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2. 전치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의 각국 비교

	법 명칭	형량	고의/반복시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내 재발시 50 % 형량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of 1970)	7천 달러 이하 벌금	고의 또는 반복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병과 可)	없음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양형자문위원회(Sentencing Advisory Pan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7.5% 수준 벌금 부과)		기업과실치사법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없음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5천 유로 이하 벌금	독일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없음
프랑스	노동법 제4부	1만 유로 이하 벌금	반복적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 벌금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VS. 기업과실치사법(영국) 비교

	한국 중대재해처벌법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처벌요건	·(주체)법인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안전담당이사 ·(원인)종사자·이용자가 안전·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결과)사망·상해사건 발생	·(주체)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senior management) ·(원인)중대한 과실이 재해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결과)사망사건 발생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해당사항 없음
법인처벌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상한 없는 벌금 규정 * 통상 연간 매출액 2.5%~10.0%, 양형자문위원회(Sentencing Advisory Panel)

대안1(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고려 법유예기간 연장)

*** 중대재해법 2022년 1월 시행**

- 1년 동안 산안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 조치 구현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 대법원 2021년 1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상 양형 기준 상향 조정**

- 6개월~1년6개월 : 1년~2년6개월로 상향
- 10개월~3년6개월 : 2~5년으로 상향
- 특별가중영역 기존 10개월~5년3개월 : 2~7년으로 강화
- 다수범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
- 5년 내 재범(다수범) 규정 신설: 법정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능

*** 산안법상 양형 기준 상향만으로도 중대재해예방효과 증가예상**

- 산안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준법조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필요
- 산안법상 양형 기준 상향 후 사태 지켜 본 후 중대재해법 보완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유예기간 연장 필요

대안2(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개정 필요)

* 산안법상의 형사처벌규정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개정 필요

- 중대재해법은 책임주체를 영국처럼 특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지시한 자만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 필요
- 형사법의 원칙은 고의범(최소한 미필적 고의)만 처벌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법은 과실범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와 제재방법이 부적절해 위헌여지 큼

결어

*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산재율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 강국인 점이 영향

- 중대재해의 형사책임을 전 산업에 부과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 후 근로자 십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 보다 감소,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

- 형벌 만능주의는 국가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반면 예방효과 미비

- 산안법의 특별법으로 형사처벌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향후 법해석상 상당한 충돌 예상

* 제조업과 건설업만이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사업주들의 투자가 위축 우려

- 국내 대기업은 국내하청기업과 하도급이나 위탁 계약 등을 회피 우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재개정

- 선진 각국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법개정 필요